

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”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
- 위치 :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, 신대동, 세교동, 모곡동, 고덕면 일원
-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공개기간 및 장소

- 공개기간 : 2024. 03. 06 ~ 2024. 03. 20(14일간)
- 공개장소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,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<http://eiass.go.kr/>)
- 공개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

3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에 제출
- 제출방법 :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(unitweight@korea.kr,
Fax: 044-201-5659)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

4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4562)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(055-922-38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
2. 주민의견제출서 1부. 끝.